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3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박상혁 · 이해식 · 이인영

이연희 · 강훈식 · 조승래

한준호 · 김한규 · 채현일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를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발생시킨 이사"를 "발생시킨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인하여 이사"를 "인하여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인하여 이사"를 "인하여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 의 유용 금지) ① <u>제398조 각</u> 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하여----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을 받아야 한다.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시킨 제398조 각 호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 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 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여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u>에 해당하는 자</u>-----.